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6
----------	-----

발의연월일: 2026. 03. 05.

발의의원: 이상기, 박경원, 김영실,
이진환, 이수련, 김지훈(국),
원주영, 이경숙, 김지훈(민),
전혜연, 박윤옥, 김상수

1. 제안 이유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범위를 초과하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중수도 설치 대상·관리를 시행령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해소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만으로 규정하여 상위법 시행령 범위를 초과한 내용을 삭제함 (기존 제3조)

다.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시설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삭제함

(기존 제4조 → 안 제3조)

라. 상위법 개정 및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기존 제10조~제16조)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덧붙임

6. 관련법령: 덧붙임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시장”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이용”을 “재이용”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빗물이용시설”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이나”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으로, “소유자, 관리자 또는”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로 한다.

제1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u>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u>,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p> <p>4. · 5. (생략)</p> <p><u>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u></p> <p>① <u>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p>	<p>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공공폐수처리시설</u> ----- ----- -----</p> <p>4.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을 설치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

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시설 및 사업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지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제3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④ 중수도 설치신고서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

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4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재이용-----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등) ①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제9조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
---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삭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삭 제>

<삭 제>

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삭 제>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생략)

<삭 제>

제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상위법과 근거없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별도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4. 작성자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